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
----------	------

제출년월일 : 2002. 10. 1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이사장 추천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

나. 임원의 결격사유를 변경함(안 제10조)

- 임용당시 결격사유 해당시 당연 퇴직
- 퇴직된 임원의 퇴직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 존속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담당관실 ☎ 940-4998
입안자	기획 담당관	박 헌 재
	경영지원담당	윤 명 채
	담 당 자	윤 희 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사장추천위원회) ①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 회와 시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 하는 자 각2인과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 되,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다. ②당해 공단의 감사를 제외한 임·직 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후보 를 복수로 추천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 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1.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